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281호)

2022.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 2  |
| 2. 지방교부세 .....         | 3  |
| 3. 개정안의 검토 .....       | 9  |
| (1) 개정안의 취지 .....      | 9  |
| (2) 추가적 고려사항 .....     | 13 |
| (3) 소결 .....           | 15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호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2. 4. 15.
3. 회부연월일 : 2022. 4. 1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현행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지방소멸 문제까지 거론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4년까지 24.00%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법령률(이하 “지방교부세율”이라 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23년 21.62%, 2024년 24.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br>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u>1만분의 1,924</u> 에 해당하는 금액<br><br>2. ~ 6. (생략)<br>② (생략) |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br>-----.<br>1. -----<br>-----<br>-----<br>-----<br>-----<br>----- <u>1만분의 2,400(2023년</u><br><u>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6</u><br><u>2)</u> -----<br>2. ~ 6.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2. 지방교부세

### (1) 의의 및 성격<sup>1)</sup>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지방교부세법」 제2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지방교부세법」 제1조)”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지니는 성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지방공유의 고유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세원을 공유하는 세원재배분의 한 형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고유재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지방교부세법」은 교부세의 재원으로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sup>2)</sup>

---

1) 손희준·서정섭,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2015), pp.104-105.,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pp.4-5.

2)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2014. 12. 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수입 중 일정비율은 당연히 지방교부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방교부세가 단순히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 아니라 본래 자치단체가 공유한 고유재원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임.

둘째, “지방의 일반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되지만, 일단 교부된 지방교부세를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그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교부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제한을 할 수 없음.

셋째,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 보완”으로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지방 간 재원재배분방안의 일환으로서 수직적인 재원불균형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짐.

## (2) 연혁 및 종류<sup>3)</sup>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제도는 1951년 4월 1일 한시법으로 제정·공포한 「임시 지방분여세법」에 의한 임시지방분여세로 출발하였는데, 6.25 직후 경제 불안에 따른 지방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재원은 당해 연도의 지세 및 영업세

---

3) 박혜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필요성 및 적정 법정률 도출”, 한국지방세연구원(2021), pp.14-23., 손희준·서정섭,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2015), pp.107-109.

예산액의 123.9/1,000에서 346.8/1,000 이내로 하였음.

1952년 「임시 지방분여세법」을 대신하여 「지방분여세법」을 제정하였고, 1958년 3월에 지방분여세의 불합리한 분여방식에 의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이를 폐지하고,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을 제정하였음.

1961년 시·군 자치제 실시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을 거쳐 1961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지방교부세로 정착되면서 다음의 변화 과정을 겪음.

구체적으로 1969년 처음으로 법정교부율(내국세의 16%) 방식을 채택하였고, 1972년 8·3조치(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sup>4)</sup>’)로 법정교부율이 폐지되었다가 1982년 법정교부율(내국세의 13.27%)이 부활되었으며, 2000년부터 법정교부율이 15%로 인상되었고, 2004년 19.13%에 이어 2006년 현행과 같은 19.24%가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됨.

결국, 정부는 그동안 지방교부세 재원규모를 확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화를 달성하고자 해왔음.

---

4) 1972년에 민간투자와 고용증가가 둔화되는 등 경기하강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1972년 8월 2일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경제와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공포하여 그 다음 날 8월 3일에 시행함. 이 조치는 기업에게 막대한 경제적 특혜를 준 것으로 기업이 과도하게 안고 있는 채무의 원리금과 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하려는 내용임.

##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혁]

| 연도   | 주요 제도 개편 내용                                                        | 세부사항                                                                                                                                                                                                                                       |
|------|--------------------------------------------------------------------|--------------------------------------------------------------------------------------------------------------------------------------------------------------------------------------------------------------------------------------------|
| 1951 | 임시지방분여세 제도로 출발                                                     | - 국세 중 특정세목(지세 등)의 일부를 교부(34.68%)                                                                                                                                                                                                          |
| 1952 | 지방분여세법 제정                                                          | - '임시'를 삭제하여 지자체의 안정적인 일반재원으로 제도화                                                                                                                                                                                                          |
| 1959 | 지방재정조정교부금 제도 시행                                                    | - 국세 중 특정세목(영업세·주세 등)의 일부를 교부(40%)<br>- 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                                                                                                                                                                             |
| 1962 | 지방교부세 제도 시행                                                        | - 국세 중 특정세목(영업세·주세 등)의 일부를 교부(40%, 85%)                                                                                                                                                                                                    |
| 1969 | 법정교부율 방식 채택                                                        | - 내국세 총액의 17.6%(보통 16.9%, 특별 1.6%) 교부                                                                                                                                                                                                      |
| 1973 | "8.3 조치"로 법정률 유보                                                   | - 국가예산에 따라 매년 교부세 금액을 정함                                                                                                                                                                                                                   |
| 1982 | 법정교부율 방식 부활<br>증액교부금 신설                                            | - 내국세 총액의 13.27% 교부<br>-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0/11로, 특별교부세는 1/11로 정함<br>- 지방의 부득이한 수요 필요시 별도로 증액교부할 수 있는 증액교부금제도 신설                                                                                                                             |
| 1991 | 지방양여금 신설                                                           | -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                                                                                                                                                                                                 |
| 2000 | 법정교부율 인상                                                           | - 내국세 총액의 15.0%                                                                                                                                                                                                                            |
| 2005 | 법정교부율 인상<br>증액교부금·지방양여금 폐지<br>분권교부세 신설<br>특별교부세 규모 축소<br>부동산교부세 신설 | - 내국세 총액의 18.3%, 19.13%로 각각 상향 조정<br>- 국고보조금 사업과의 중복, 과잉투자 등의 문제지적으로 증액교부금 및 지방양여금 폐지<br>-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분권교부세 신설(내국세 총액의 0.83%)<br>-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96%, 특별교부세는 4%로 조정<br>-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자치단체에 종합부동산세 징수세액 전액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 신설 |
| 2006 | 법정교부율 인상                                                           | - 분권교부세를 상향 조정(0.83%→0.94%)에 따라 지방교부세 법정률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상향 조정                                                                                                                                                                            |
| 2011 | 보통교부세 산정시 자체노력 반영                                                  | -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 정도를 반영                                                                                                                                                                                                   |
| 2014 | 특별교부세 법정률 축소                                                       | -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분권교부세액 제외한 금액의 97%, 특별교부세는 3%로 조정                                                                                                                                                                                |
| 2015 | 소방안전교부세 신설<br>분권교부세 폐지                                             | - 주요 화재 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함<br>- 분권교부세 폐지 대신, 물교부단체에 대하여 종전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로 5년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 2020 | 소방안전교부세를 상향 조정                                                     | - 담배부과 개별소비세의 45%로 상향조정                                                                                                                                                                                                                    |

※ 자료: 박혜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필요성 및 적정 법정률 도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 p.23.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종류로는 ① 보통교부세, ② 특별교부세, ③ 부동산교부세, ④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sup>5)</sup>할 수 있는 바,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를 그 재원으로 함.

둘째,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3%를 그 재원으로 함.

셋째,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기초단체에 균형재원으로 교부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전액을 그 재원으로 함.

넷째,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그 재원으로 함.

---

5)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특성]

| 구분 |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소방안전교부세                                         |
|----|------------------------------------|------------------------------------|-------------------------------------------|-------------------------------------------------|
| 목적 | 자치단체 부족재원<br>보전 및 재정불균형<br>시정      | 지역별 특별 재정<br>수요 지원                 | 지방재정 확충 및<br>재정불균형 시정                     | 지자체 소방 및<br>안전시설 확충,<br>안전관리 강화 등               |
| 재원 | 내국세의 19.24%                        |                                    | 종합부동산세<br>100%                            | 담배에 부과되는<br>개별소비세 총액의 45%                       |
|    | 재원의 97%1)                          | 재원의 3%                             |                                           |                                                 |
| 배분 | 재정수요 대비<br>재정수입 부족액<br><br>(공식 배분) | 재해예방, 복구,<br>시책 등<br><br>(신청 및 심사) | 재정여건, 사회복지,<br>지역교육, 보유세<br>규모<br>(기준 배분) | 소방 및 안전시설, 재난<br>및 안전 강화, 재정여건<br>고려<br>(기준 배분) |
| 성격 | 일반재원                               | 특정재원                               | 일반 재원                                     | 특정재원                                            |

※ 자료: 손희준·서정섭,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2015), p.109

### 3. 개정안의 검토

#### (1) 개정안의 취지

현행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및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sup>6)</sup>하고 있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65조 5,171억원 및 2조 2,630억원을 합한 67조 7,801억원 규모이고,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제잉여금은 18조원으로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6조 856억원임<sup>7)</sup>.

- 6)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2014. 12. 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 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4.15.)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정산분 6조 856억원 중 특별교부세 정산 유보금(1,515억)을 제외한 5조 9,341억을 지방교부세로 배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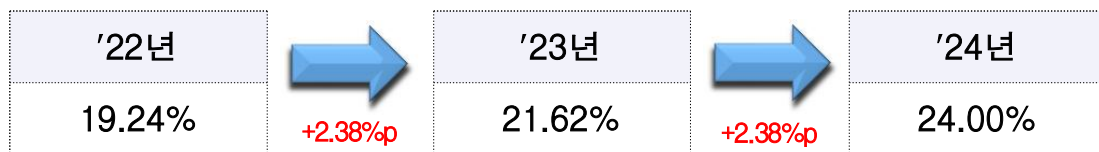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0803>

[지방교부세 정산분 배분(단위: 억원)]

| 총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 59,341* | 1,117 | 2,079 | 1,557 | 1,601 | 1,195 | 1,223 | 898   | 100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4,519   | 6,095 | 3,764 | 4,893 | 5,621 | 7,611 | 9,146 | 6,261 | 1,659 |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향후 2년 동안 2.38%p씩 인상하여 총 4.76%p 인상하려는 것으로, 2023년 지방교부세율을 21.62%, 2024년부터 24.0%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지방교부세율 변화]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됨.

첫째, 지방교부세율이 2006년 이후 내국세의 19.24%로 동결됨에 따라 지방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내국세 규모가 증가하여 보통교부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sup>8)</sup>-기준재정수입액<sup>9)</sup>)은 저출산·고령화 및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행안부 특별교부세 정산 유보금(1,515억원)은 미포함 → 추후 재해 등 관련소요 발생 시 교부 예정

8)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 재정수요액

9)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 재정수입액

## [최근 10년 간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 재원충족률 추이]

(단위 : 조원, %)

| 연도    | 보통교부세 | 재정부족액 | 미충족분 | 재원충족률 |
|-------|-------|-------|------|-------|
| 2013년 | 31.4  | 34.3  | 2.9  | 91.5  |
| 2014년 | 31.9  | 35.4  | 3.5  | 90.1  |
| 2015년 | 32.2  | 35.6  | 3.4  | 90.4  |
| 2016년 | 33.2  | 35.8  | 2.6  | 92.7  |
| 2017년 | 37.6  | 38.5  | 0.9  | 97.7  |
| 2018년 | 42.5  | 44.7  | 2.2  | 95.1  |
| 2019년 | 47.6  | 53.0  | 5.4  | 89.8  |
| 2020년 | 46.7  | 53.9  | 7.2  | 86.6  |
| 2021년 | 44.5  | 56.4  | 11.9 | 78.9  |
| 2022년 | 55.1  | 61.7  | 6.6  | 89.3  |

※ 자료: 지방재정365(통합자료실-예산-교부세현황), 각 연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2022년도 기준으로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98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56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세 수입 또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단위 : 단체수)

| 구분  | 계          | 시·도        | 시         | 군         | 자치구       |
|-----|------------|------------|-----------|-----------|-----------|
| 계   | 243        | 17         | 75        | 82        | 69        |
| 지방세 |            |            |           |           |           |
| 해결  | 145(59.7%) | 17(100.0%) | 61(81.3%) | 14(17.1%) | 53(76.8%) |
| 미해결 | 98(40.3%)  | -          | 14(18.7%) | 68(82.9%) | 16(23.2%) |
| 자체  |            |            |           |           |           |
| 해결  | 187(77.0%) | 17(100.0%) | 70(93.3%) | 36(43.9%) | 64(92.8%) |
| 미해결 | 56(23.0%)  | -          | 5(6.7%)   | 46(56.1%) | 5(7.2%)   |

※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p.385를 바탕으로 재구성  
 지방재정365(통합자료실-예산-통합재정개요)

※ 자체수입=지방세수입+세외수입

둘째,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화 및 비수도권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지방재정수입의 구성 내용을 보면 수도권은 자체 예산 중 지방세 비중이 높고 교부세 비중이 적은 반면, 비수도권은 자체재원이 부족하므로 교부세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남.

구체적으로 2016년~2020년 지방세 수입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보면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비중이 전체 지방세수의 55~5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 불균형이 심각함.

#### [2016~2020년 지방세 수도권·비수도권 비중]

(단위: 억원, %)

|         | 2016 결산           | 2017 결산           | 2018 결산           | 2019 결산           | 2020 결산           |
|---------|-------------------|-------------------|-------------------|-------------------|-------------------|
| 수도권     | 412,980<br>(54.7) | 444,348<br>(55.3) | 479,683<br>(56.9) | 512,157<br>(56.6) | 565,207<br>(55.4) |
| 비수도권(시) | 134,128<br>(17.7) | 141,774<br>(17.6) | 143,619<br>(17.0) | 153,945<br>(17.0) | 175,685<br>(17.2) |
| 비수도권(도) | 208,209<br>(27.6) | 217,969<br>(27.1) | 219,881<br>(26.1) | 238,502<br>(26.4) | 279,596<br>(27.4) |
| 계       | 755,317           | 804,091           | 843,183           | 904,604           | 1,020,488         |

※ 자료: 행정안전부, “2021 지방세통계연감” p.6을 바탕으로 재구성  
지방재정365(통합자료실-결산-지방세통계연감)

바람직한 지방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자체세입으로 조달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도권에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 확충

을 통해 자체재원을 조달할 시에 지역 간 세수불균형 문제가 크게 초래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세만으로는 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며, ②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편차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운용에 자율성을 가지면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교부세율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됨.

## (2) 추가적 고려사항

지방교부세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중앙정부 재원의 감소를 전제로 하므로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등 국가재정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sup>10)</sup>하였으며,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원이 대폭 확충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최근, 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 및 2단계 재정분권 조치를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1%에서 2022년부터 25.3%로 인상<sup>11)</sup>

10)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결산): ('19) 37.7% → ('21) 47.0% (자료: 행정안전부)

11) 2018년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 2022년 25.3%로 인상되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2018년) 77.7: 22.3 → (2019년) 76.4: 23.6 → (2020년) 73.7: 26.3으로 변화됨.

(출처: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3](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3))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지방세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2010년부터 시행함. 지방소비세율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을 의미함.

하였고, 향후 10년 간(2022년~2031년) 매년 1조원이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sup>12)</sup> 역시 신설하였는 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 도입된 초기이므로 변경된 제도의 시행 경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상향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의존도를 심화시켜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절감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 등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와 같은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 운영에 있어선 차별책 유인책을 설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sup>13)</sup>.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시 지자체 일반재원이 증가하여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의 주도적 성장동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보아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국가 및 지방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1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13) 최정열·박석희,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 문제와 재정분권화 방향”,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3호(2018. 12), pp.259-261.

### (3) 소 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①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여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개정안에 따라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 증가하므로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점, ③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지방 간 재원 재배분 방안의 일환으로서 수직적인 재원 불균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므로 세수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됨.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지방재정수입은 향후 5년 간 70조 3,885억 원, 연평균 14조 77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2023년~2027년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방재정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합 계     | 연평균     |
|----------------------------|--------|---------|---------|---------|---------|---------|---------|
| 지방교부세율<br>상향 조정<br>(안 제4조) | 70,757 | 147,988 | 154,795 | 162,221 | 168,123 | 703,885 | 140,777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다만,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중앙정부의 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33 |